

##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6조에 의거 각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응시자격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어시험 : 1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
2. 종합시험 : 각 과정의 이수학점(석사학위과정 : 18학점, 박사학위과정 : 27학점, 통합과정 : 45학점)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- 가.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: 석사학위과정 18학점, 박사학위과정 27학점, 통합과정 4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
  - 나. 특수대학원 : 1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. 다만 교육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
  - 다. 가, 나목의 경우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제외한다.

제3조(지원절차)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  
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지원서를 학과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험횟수 및 시기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고, 그 시기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다.

제5조(시험방법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한다.
2. 시험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다만 종합시험의 방법은 학과책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,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운영위원회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4. 아래의 기관에서 인증한 소정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성적유효기간은 소속 대학원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한다.
  - 가. 공인기관

| 구 분      |     | 영어영문학 이외 전공자         | 영어영문학 전공자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OEIC    |     | 700점 이상              | 750점 이상   | 석·박사 동일.<br>단, 한국어는<br>외국인에 한함 |
| TOEFL    | PBT | 535점 이상              | 550점 이상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CBT | 207점 이상              | 213점 이상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IBT | 76점 이상               | 79점 이상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TEPS     |     | 600점 이상              | 650점 이상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NEW TEPS |     | 327점 이상              | 355점 이상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ELTS    |     | 5.5 이상               | 6.0 이상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국어      |     |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나. 본 대학교

| 구 분 |           | 면제기준   | 비고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대학원 | 영어강좌 프로그램 | 70점 이상 | 석·박사 동일 |
|     | 영어 시험     | 60점 이상 |         |

※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지문을 한국어로 출제하고 영어로 답하게 할 수 있다.

5.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영어권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출제 및 채점위원)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각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고,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이 겸한다.

제7조(출제과목 및 범위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과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어시험

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고,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되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.

2. 종합시험

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시험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.

제8조(합격기준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, 외국어 시험은 60점 이상, 종합시험은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9조(합격인정 및 결과보고) ① 외국어 및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이 인정된다.

② 각 대학원장은 시험의 시행 결과와 합격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시험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 (적용례)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5조 제3호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제4호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유효한 성적을 취득·제출한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.